

꿈을 키우는 도약 캠프 강사 모집 공고문

서울신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서울신양초등학교 꿈을 키우는 도약 캠프 강사 채용 공고

서울신양초등학교 꿈을 키우는 도약 캠프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신양초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등

분야	인원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꿈을 키우는 도약 캠프 강사	3	서울신양초등학교	○방학 중 도약캠프 강사로 3~6학년 국어, 수학 지도 계획 수립 및 지도 * 세부내용은 담당교사와 협의 결정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3학년 이상)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교육봉사자’

나. 근무 기간:

- 2026년 8월 3일(월)~ 2026년 8월 7일(금) 중 개별 협의
- ※ 근무 기간은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근무 시간에 따라 추후 협의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라. 근무 시간

- 09:00~12:10, 주 15시간 내외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추후 협의

마. 복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바. 유의사항: 근무 형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3.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조건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과목 무관) 자격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해당 학년 및 교과에 따라 중등 자격 소지자를 유치원 자격 소지자보다 우대할 수 있음)
- 교사임용 대기자, 퇴직 교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4.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026. 7. 16.(목) ~ 2026. 7. 22.(수)
- 접수 방법: 업무 담당자 이메일(kyngsun@sen.go.kr) 접수
※ 파일명 : (이름 ○○○) 신앙초 꿈을 키우는 도약 캠프 강사 지원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 24.(금) 16:00 이후(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 2026. 7. 27.(월) 14:30, 본교 1층 해랑채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27.(월) 16:00 이후(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행정실 비치)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근로계약서 작성 시 학교에서 양식 제공)
- 통장 사본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 확인용 증빙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026. 7.29.(수) 내 미제출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후에도 근무 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2, 서울신양초등학교
- 연락처: 교무실(☎ 02-2201-8081)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1> 응시원서(예시)

응시원서

접수번호	*미기재						사진 (반명함판) * 반드시 사진 첨부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겸직 등	* '26.3.1.~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타학교 등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기관명 : 고용기간 :						
학력 사항 (고교 이상만 기재)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경력 사항	근무처		기간	직위(급)	비고		
소지 자격	취득일자		자격명			발급기관	
본인은 서울신양초등학교에서 공고한 도약캠프 강사 모집 신청을 하면서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의 미비·허위·변조·과대 작성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를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며 붙임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7. ○. 지원자: _____ (인) 서울신양초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근거
직원 채용	- 인적사항: 사진, 성명, 지원분야, 주소, 생년월일, 학교경력, 전화 - 학력사항: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 학과/전공 -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급) - 자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붙임2> 자기소개서(예시)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	-----------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학생 지도 계획(기초학력 관련), 학생 관찰 및 상담 방법 등
-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00년 0월 0일

작성자: 000

<붙임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 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제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신양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